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 1단계 적용 및 조치 사항 안내

---

### 1. 관련 근거

-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11.1.)
-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6501(2020.10.11.)
-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6502(2020.10.11.)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의 지속 가능성, 정밀한 방역, 의료여력,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정례회의(11.1일)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마련·배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된 1단계로 적용하고, 일부 시설·활동별 방역수칙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3. 중앙정부, 지자체, 관련 산하 및 공공기관에서는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등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 개편된 거리두기 1단계 조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 예정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 아 래 -

○적용 기간 : 2020년 11. 7.(0시 부터) ~ 별도해제시까지

### 1).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 시설 : 중점관리시설 9종\*
  - \*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 이상)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 지침 의무화

#### **붙임 1. 전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 2).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조치 대상 : 일반관리시설 14종\*
  -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 지침 의무화

#### **붙임 2. 전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 3). 모임·행사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 참여 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 마스크 착용, 명단관리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방역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 협의 대상 모임·행사(예시) >**

- ▲ 행사 :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 ▲ 사적모임 :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 ▲ 각종시험 :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붙임 3. 전국 모임·행사 방역 지침 1부**

### 4). 종교시설

- 조치 대상 : 종교시설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 지침 의무화
  -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 붙임 4. 전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 5).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지자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
  - \* 부처·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6). 사회복지이용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가능한 경우 비대면 서비스 병행

##### 7). 스포츠 관람

- 조치 내용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관중 입장

##### 8). 등교

- 조치 내용 : 2/3 밀집도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함. 과대·과밀학교는 2/3 유지 권고

##### 9). 재택근무 등 활성화

-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1/5) 재택근무 등 실시
-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기관(인력)은 제외

#### 4. 위와 같은 방역 조치의 이행을 위해

- 각 부처, 지자체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 대상시설이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운영 시 준수사항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 각 지자체는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고, 사업장에서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행안부)는 중앙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각 지자체, 관련부처의 이행상황 점검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5.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 1부. 끝.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장

수신자 본부각과장,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 중앙방역대책본부



주무관	<b>강재희</b>	행정사무관	<b>이성경</b>	생활방역팀장	<b>김정숙</b>	전략기획반장	<b>손영래</b>
코로나바이러스 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 본부 총괄책임 관	<b>이기일</b>	코로나바이러스 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 본부 부분부장	<b>강도태</b>	코로나바이러스 스감염증-19중 앙사고수습본 부 부분부장	<b>박능후</b>		

협조자

시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2020. 11. 4.)      접수  
중앙사고수습본부-28852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ncov.mohw.go.kr>

전화번호 044-202-1722      팩스번호 044-202-1971      / [jaehuekang@korea.kr](mailto:jaehuekang@korea.kr)      / 비공개(5)